

의안번호	제211호
------	-------

제출연월일  
2023. 11. 17.

#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예	산	군
수		



#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211호
----------	-------

제출년월일 : 2023. 11. 17.

제 출 자 : 예산군수

## 1. 제안이유

-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교복비 지원이 보편화되어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 제외사유 :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2】**

4)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조례안 전문]

###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나. 「주거급여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교복구입비”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주민 자녀 중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시기) 교복구입비는 매년 중·고등학교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군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자의 진학예정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확정된 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제2348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1】 관계법령

### □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동복과 하복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교복구입비를 지원 대상 학생이 전·입학한 중학교로 지원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중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 금액)** ①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8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3.30.>

1.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범위)**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기준일부터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한정한다.<개정 2022.3.30.>

1. 군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군에 소재한 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3.30.>

② 읍·면장 또는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자의 자격여부와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3.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기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발생사항 없음

**4. 작성자 :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담당자 현황** 【행정복지국장 정윤교,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기초생활팀장 김미경, 담당자 한산홍 ☎339-7412】